2023년도 제8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

2023년도 제8차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▢ 회의일시 : 2023. 12. 8.(금) 14:00~18:00

▢ 회의장소 : 스파크플러스 삼성2호점 406호 회의실

▢ 심의결과

1. 규칙개정안건

안건수	원안 가결	수정 가결	심의 보류	부결
8건	7건	-	-	1건

2. 일반의결안건 · 보고안건

일반의결안건					보고안건	
안건수	원안 가결	수정 가결	심의 보류	부 결	안건수	원안 접수
-	-	-	-	-	2건	2건

붙 임 : 1.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2. 보고사항 결과

2023. 12. 8.

위원장	한국전력거래소	정동희
위 원	한국전력거래소	김홍근
	산업통상자원부	김남혁
	고려대학교	박호정 (불 참)
	건국대학교	노재형
	법무법인 광장	조영재
	한국전력공사	정재천 (대리참석)
	한국중부발전	김광일
	SK E&S	단희수
간 사	한국전력거래소	옥기열

간상환/20240102095311

03584025041704156472

【붙임 1】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예측제도 등록시험 신청일정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제8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3-8-1호
개최일시	2023년 12월 8일 14:00~18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
제안내용

□ **(제14.3.1조)** 예측제도 등록시험 신청일정 확대 일원화

○ 현행 신규 및 탈락자원의 신청 일정이 이원화되어 있으나, 신규자원 신청 일정을 확대하여 모든 시험자원의 신청 일정을 일원화

규정	현행	개정(안)
제14.3.1조 제1항	• 등록시험 신청 일정 - 필요서류를 갖추어 시험월 1일(거래일 기준) **10일 전**(영업일 기준)까지 신청하는 것을 기본 - 단 전월에 시험을 본 경우 및 전월까지 대상자원이었다가 탈락한 경우에는 10일 전(영업일 기준)까지 신청이 불가하여 **5일 전(영업일 기준)까지 신청**하도록 함	• 등록시험 신청 일정 - 필요서류를 갖추어 시험월 1일(거래일 기준) **5일 전(영업일 기준)까지 신청**하도록 함 - 신규자원 및 탈락자원의 일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동일하게 시행

<참고> 현행 등록시험 신청 일정(신규자원과 탈락자원 신청 일정 상이)

- 등록제외 및 시험탈락 확정 시점 고려(신규자원 신청일정 내 불가)하여 이원화

신규자원	대상 탈락(등록제외)자원 및 시험 탈락자원
등록시험 시행월 1일 기준 10일전(영업일 기준)까지 신청	등록시험 시행월 1일 기준 5일전(영업일 기준)까지 신청

주요 토의내용

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

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3년 12월 8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직인)

김상환/20240102095311

0358402504170415647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제3자간 전력거래의 초과발전량 시장거래 허용에 관한 규칙개정(안)

제8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3-8-2호
개최일시	2023년 12월 8일 14:00~18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□ **(등록절차 마련) 제3자간 전력거래 초과발전량의 전력시장거래 허용**을 위한 조항 신설 ☞ 용어 신설(제1.1.2조), 등록절차 마련(제1.2.2조 제5항) 등 □ **(수수료 부과근거 마련) 판매사업자에게 제공**하는 **정보 및 시스템 사용** 등의 **수수료 부과** 근거 마련 ☞ [별표8] 정산 및 결제절차 7.8.1.3 ○ 제3자PPA 고시 제15조제4항에 따라 **전력거래시스템 사용 등의 대가**로 **직접PPA 수수료와 동일**하게 **판매사업자에게 청구** □ **(정산수식 수정)** 전력거래소와 판매사업자가 **부가정산금을 전기사용자에게 중복 청구(제3자PPA 고시 제18조제1항제4호)하지 않도록 정산수식 수정** 및 기존 직접PPA와 제3자PPA 구분을 위한 **플래그 신설** ☞ [별표1] 기호 및 변수의 정의, [별표2] 정산기준 □ **(기타 개정사항)**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정산을 **월 1회에서 월 4회로 변경** ☞ [별표8] 7.11.1.4 삭제 ○ 기존 전력시장 정산스케줄과 동일하게 정산일정 변경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 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3년 12월 8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직인)

김상환/20240102095311

0358402504170415647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수요자원 거래시장 등록절차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제8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3-8-3호
개최일시	2023년 12월 8일 14:00~18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□ **(등록절차 명확화)** 등록서식 세분화 및 미비사항 보완 ○ **(서식 세분화)** 기존 3개로 구성된 등록신청서 양식을 목적(등록·변경·삭제) 및 수요자원 종류에 따라 16개로 세분화함 ○ **(미비사항 보완)** 참여고객의 정보 변경, 자원 이동 등 규칙에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함 ○ **(적용 유예)** 규칙 개정으로 인한 업무 불편 방지를 위해, 2024년 2월까지 개정 전 양식을 유효한 양식으로 인정함(부칙) □ **(등록 검토기간 연장)** 등록 신청기간을 월 중순으로 앞당김 ○ 등록 신청기간(시스템 등록, 등록e서류 제출 기간) 마감을 월 중순(20일)으로 앞당겨, 서류 검토, 중복고객 확인 등 등록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간을 추가로 10일 더 확보함 ○ **(적용 유예)** 규칙 개정으로 인한 업무 불편 방지를 위해, 2024년 10월까지 개정 내용 적용을 유예함(부칙) □ **(기타사항)** 규칙 가독성 제고를 위한 일부 문구 및 구성 수정, 청구서·통지서 양식 변경 등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 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3년 12월 8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직인)

김상환/20240102095311

0358402504170415647 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전력거래 계량 신뢰성 강화를 위한 계량설비 봉인 규칙개정(안)

제8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3-8-4호
개최일시	2023년 12월 8일 14:00~18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□ 계량설비 의무 **성능시험 준수 및 보안성 강화, 봉인신청·시공 규정 상세화** ○ **(성능확보)** 회원사의 전력량계 의무 검정시험·오차시험 미시행 시 불이익 명시 ○ **(보안성)** 전력량계 및 모뎀에 전력거래 용도 외 설비와의 연결 원칙적 차단규정 추가 ○ **(봉인신청·시공)** 봉인신청시 사전 충족 요건 및 현장 봉인시공 가능요건 상세화 □ **現 계량설비 봉인업무 체계를 반영**한 규칙정비 및 **용어 명확화** ○ 봉인완료통지서 발급시점 명확화, 납 봉인 관련 조항·문구 삭제 ○ 계량설비 검사항목을 반영한 용어 변경(명확화) : 안전성 → 건전성 ○ 現 사용 시스템으로 변경 : 봉인사용대장·수불대장 → 전력거래시스템 ○ 실무 최적화를 위한 계량등록부 양식(별지 제37호) 변경 : 명칭 명확화, 불필요 정보 삭제, 확인자 작성란 추가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 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3년 12월 8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직인생략)

김상환/20240102095311

0358402504170415647 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비중앙급전발전기 등록절차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제8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3-8-5호
개최일시	2023년 12월 8일 14:00~18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☐ **'비중앙급전시운전발전기' 정의** 및 비중앙급전발전기의 **상업운전 개시 신고 관련 조항 신설** ☐ 발전기 **최초전력거래개시 요건 명확화** ㅇ 문서를 통한 최초전력거래개시 승인요청 기한 명확화, 검토항목 중 계량설비 봉인요건 추가, 기타 명확한 표현으로 문구 수정 ㅇ 태양광발전기의 승인요청 기한 및 승인일 지정 규정을 별도로 신설 ㅇ 승인요건 미충족시 거래소의 회원사 통보 및 관련 사업자 조치 의무 추가, 최초전력거래개시 승인통보·등록완료 규정 신설 ☐ 회원사 편의 및 실제 업무처리 일정을 고려한 **영업일 기준 적용** ㅇ 제1.2.5조(등록 및 최초 거래승인) 부문 전력거래 개시 방법·기간 및 승인요건 명확화, 現 업무체계를 반영하여 승인 항목 중 계량설비 봉인요건 추가 ㅇ 등록요건 미충족시 전력거래소의 회원사 사전고지 및 관련 사업자들의 사전 조치 의무 추가(고객만족 향상 및 불필요한 분쟁 미연 방지 목적)
주요 토의내용	☐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 ㅇ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3년 12월 8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직인)

김성환/20240102095311

0358402504170415647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 시범사업 규칙개정(안)

제8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3-8-6호
개최일시	2023년 12월 8일 14:00~18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제안내용	□ **(고정가격계약의 정산상한가격)** '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'에 의거 고정가격계약 체결 발전기에 대해서는 고정가격계약 단가를 정산상한가격으로 적용하는 사항을 제주 시범사업에도 반영 ○ 제주 시범사업에도 고정가격계약 체결 발전기에 대하여 정산상한이 적용됨을 기존 규정에 명시화 ○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 및 비중앙급전 발전기에 대한 에너지정산금(MEP) 정산 시 고정가격계약단가 이상 정산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정산산식을 제주 시범사업 정산규정에 신설 □ **(보조서비스 및 급전지시 불이행 규정)** 보조서비스 및 급전지시 불이행 관련 기존 정산규정(별표2 I.9.나., 별표2 I.12.다.5)을 차용하여 제주 시범사업에도 적용(별표33 3. 다., 별표33. 3. 바.) □ **(예측제도 경과조치)**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의 구성조건의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존 문구를 명확화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 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3년 12월 8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직인)

김상환/20240102095311

0358402504170415647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하한제약 발전기 기대이익정산금(MAP) 지급 판단산식 신설(안)

제8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3-8-7호
개최일시	2023년 12월 8일 14:00~18:00
제 안 자	한국전력공사
제안내용	□ **(개정 필요성) 기대이익정산금의 정의와 정산금 지급여부 판단산식 간 정합성 제고** ○ 실계통기반 시장 전환 후 제약입찰량이 하루전발전계획에 반영, **발전사가 제약입찰량 하향조정시 기대이익정산금이 불필요하게 발생** ○ 기대이익정산금은 '전력거래소의 지시에 의해 감축'할 경우 지급하는 정산금이므로 **제약입찰량 변경에 따른 정산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급여부 판단 산식의 구체화 필요** □ **(개정내용) 하한제약 발전기의 기대이익정산금 지급 판단산식 신설** ○ 하한제약 발전기에 한하여 **① 최초 제약입찰량이 하루전발전계획보다 크거나 같고, ② 발전량이 공급가능용량, 발전계획량, 변경 제약입찰량 중 가장 작은 값에서 허용오차를 제한 값보다 클 경우** 지급대상에서 제외** * 고정출력발전기의 판단산식상 허용오차 적용('23-5차 규칙개정) ** min(공급가능용량, 발전계획량, 변경제약입찰량) - 발전량 ≤ 허용오차) → MAP 미지급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원안가결** ○ **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**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3년 12월 8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직인)

김상환/20240102095311

03584025041704156472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도입에 따른 고효율열병합 발전기 실제연료비 보전정산금 신설 규칙개정(안)

제8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3-8-8호
개최일시	2023년 12월 8일 14:00~18:00
제 안 자	한국지역난방공사 외 1개사
제안내용	□ **(개정내용)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시행기간** 간 사업자 **실제연료비가 보전**될 수 있도록 **별표1(기호 및 변수의 정의) 및 별표2(정산기준) 정산식 보완** ○ **정산항목 추가**를 통한 실제 연료비 손실 보전 - **(약어정의) EAHMWP** (EPC Additional Heat Make Whole Payment, EPC 기간 추가 고효율 열병합발전기 열제약운전 변동비보전정산금) - **(정산기준) 실제 연료비와 SMP를 비교, 지급여부 판단** · 실제 연료비 < SMP 정산금 : **EAHMWP 지급** (HMWP, SMWP, MAP차감) · 실제 연료비 > SMP 정산금 : **EAHMWP 미지급** (기존과 동일)
주요 토의내용	□ **회의결과 : 부결** * 표결 : 전체 8표 중 원안찬성 1표, 원안반대 7표 ○ **표결결과, 가결요건(출석위원(8人) 과반수 찬성)에 미달하여 본 안건은 부결처리함** - 본 안건에서 제안한 보상방안은 **제23-5차에서 제안한 시장정산식 기준의 보상방식(무부하비 50% 추가 정산)과 동일**하며, 여전히 **전력시장의 일반원칙과 배치**된다는 측면에서 **위원 다수가 반대**하였음 ○ 다만, **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도입**에 따라 **집단에너지 사업자 재무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**되므로, **향후 보다 합리적인 방식의 대안 고려가 필요**하다는 **의견** 有

심의 결과 : 부결

2023년 12월 8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정 동 희 (직인)

김상환/20240102095311

03584025041704156472

【붙임 2】

보고사항 결과

보 고 내 용	보 고 결 과
▪ **(제1호)** 규칙개정위원회 위원 변경	○ 원안 접수
▪ **(제2호)** 전차(제23-7차) 규칙개정위원회 결과보고	○ 원안 접수

김상환/20240102095311

0358402504170415647 2